



제422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범위 확대 등〉

-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01호)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41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 통보 대상 확대(공통)	4
2. 거래정보등의 요구·제공·유예 등 현황 통계 내실화(천준호의원안)	15
3.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제도 변경(이정문의원안)	19
4.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금지 의무 삭제 등 (천준호의원안)	31

I. 제안경위

1. 천준호의원안

가. 제 안 자 : 천준호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1. 4.

다. 회 부 일 : 2024. 11. 5.

2. 이정문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정문의의원 등 16인

나. 제 안 일 : 2024. 11. 25.

다. 회 부 일 : 2024. 1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천준호의원안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원의 영장없이도 금융기관에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영장없는 계좌추적’은 당사자에게 통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최근 시중 10개 은행사들이 국회에 제출한 통계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요구한 금융거래정보는 윤석열 정부(2022년 7월 ~ 2024년 6월)들어 연 평균 14,253건에 달해 문재인 정부(2020년 1월 ~ 2022년 6월)의 6,647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4에 따라 매해 정기국회에 금융거래정보 요구, 제공, 통보 등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계가 합쳐져 있어 금융감독원의 요구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

더 큰 문제는 해당 통계의 기준이 공문건수라는 점임. 공문 하나당 100명, 1,000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해도 통계상으로는 1건으로 집계되어 금융거래정보 요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금융위, 금감원의 ‘영장없는 계좌추적’도 당사자에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계 또한 각 문서의 수, 금융거래정보 명의인 수, 계좌번호의 수 등 상세한 통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금융당국의 계좌추적권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4).

2. 이정문의원안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이후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중에서도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거나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입법례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를 참고하여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명의인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되도록 현행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금융거래정보의 수집을 방지하고, 명의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Ⅲ. 검토의견

1. 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 통보 대상 확대(공통)

□ 개정안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¹⁾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현행	천준호의원안	이정문의의원안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 ----- ----- ----- ----- ----- ----- ----- ----- 제3호·제4호----- ----- ----- ----- ----- ----- ----- ----- ----- ----- -----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u>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통보의무자”라 한다)는 제공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정보등 제공의 대상이 된 명의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u>

현행	천준호의원안	이정문의원안
통보하여야 한다.	----- -	다. 1. <u>거래정보등 제공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u> 2. <u>거래정보등 제공을 한 자</u> 3. <u>거래정보등 제공을 받은 자</u> 4. <u>거래정보등 제공을 받은 날짜</u>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하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음.²⁾

1) 이정문의원안의 경우 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 통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외에 통보 절차 전반을 변경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후술하는 3. 항목 이하에서 검토함.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 또한, 법 제4조의23)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

이상인 채납자의 경우에는 채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채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채납자의 6촌 이내 혈족

다. 채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 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이와 같이 현행법상으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제4호), 금융회사등 내부 또는 상호간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제5호) 또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협조(제6호)를 위해 요청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이상거래의 심리 등을 위해 요청(제7호)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금융실명법」에서 금융감독원 등 일부 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그 사실에 대한 통보 예외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의무적으로 제공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다른 사유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해당 기관이 거래정보 제공 요구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개정안은 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 통보 예외 사유에서 금융

③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거나(천준호의원안), 「금융실명법」 제4제1항 중 제5호(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이정문의의원안)⁴⁾으로,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표 1] 개정안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 통보 대상 변화

구분	대상	현행	천준호의원안	이정문의의원안
제1호	· 법원 제출명령 또는 법관 발부 영장에 따른 제공	○	○	○
제2호	·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 상속·증여 재산, 조세탈루 혐의, 체납자 재산 등 확인	○ ¹⁾	○ ¹⁾	○ ²⁾
제3호	·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 조사위 의결에 따른 제공	○	○	○
제4호	· 금융위·금감원·예보의 금융회사등 감독·검사를 위한 제공	×	<u>○</u>	<u>○</u>
제5호	· 금융회사등 내부 또는 상호간 업무상 필요한 정보	×	×	×
제6호	·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업무협조	×	×	<u>○</u>
제7호	· 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 등을 위한 제공	×	×	<u>○</u>
제8호	· 다른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	○	○	○

주1: 다만,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경우 통보 대상에서 제외

주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경우도 포함

4) 개정안에 포함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2. 항목 이후에서 검토함.

- 개정안과 같이 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 통보 예외 사유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먼저, 개정안의 필요성은 크게 적법절차원칙을 통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측면과 금융감독원 등의 거래정보등 요구 권한에 대한 남용 방지 필요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음.

- 첫째,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5)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⁶⁾을 내리면서, 해당 규정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헌법 상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음.

- 적법절차원칙⁷⁾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절차적 요청으로는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등이 포함되나, 해당 법률 조항은 아무런 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5)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3. 이용자의 주소 /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 부호를 말한다) /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6)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2022헌마126(병합), 2022헌마105, 110(병합)

7)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된다는 입장임.

통제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사유였음.

-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과 같이 「금융실명법」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 통보 대상을 확대할 경우 헌법 상 적법절차원칙에 보다 부합하게 되어 명의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둘째,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또는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 거래정보등이 제공된 이후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이 이루어지는 사례⁸⁾가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명의자에 대한 제공 사실 통보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권한 남용 우려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받고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이 영장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공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 제공 요구를 우회할 수 있다는 비판도 가능함.

8)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것을 토대로 금융회사 검사 또는 불공정 거래 조사 과정에서 2024년 기준 198명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의뢰 또는 검찰 고발·통보 등이 이루어짐(금융회사 검사 관련 형법·특정경제범죄법·금융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7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120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함).

○ 셋째, 감사원은 「감사원법」 9)에 따라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명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¹⁰⁾하고 있음.

- 동일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또는 감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경우 명의자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으나, 감사원은 명의자에 대한 통보 의무가 있으므로, 기관 간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조사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수사기관과의 차이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 첫째,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업무의 특

9) 「감사원법」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② 감사원은 이 법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성 상 거래정보등 제공 사실이 명의인에게 통보될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확인 전 증거인멸·도주 등의 우려가 크고, 주요 증권범죄의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발까지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어 통보유예 조항¹¹⁾을 활용하더라도 검찰 수사 착수 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여전히 상존한다는 입장임.

-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위와 같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았으나 혐의 대상에서 제외된 명의자의 경우 제공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혐의자로 조사받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함.

○ 둘째, 수사기관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정보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어 영장을 통해 제공을 요구하도록 하되 금융회사 본점에 대한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반면, 금융감독원은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받는 대신 특정점포에 대한 조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¹²⁾하고 있

11) 현행 금융실명법에서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통보 유예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장 12개월(6개월 + 3개월 + 3개월) 간 통보를 유예할 수 있음. 다만,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유예기간의 제한이 없고, 상속·증여 재산 확인, 조세탈루 혐의 확인, 채납자의 재산조회 등의 경우에는 제한없이 매 6개월마다 통보를 유예할 수 있음.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② (본문 생략)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

다는 차이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편, 이정문의원안에서 금융감독원등 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 감독기관과의 업무협조(법 제4조제1항제6호), 거래소(제7호)에 대해서도 명의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금융감독원의 의견이 있었음.

- 특히,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업무협조의 경우 ‘국제증권감독 자기구(IOSCO)의 강화된 다자간 양해각서(EMMoU)’에 따라 비밀보장 의무¹³⁾가 있으므로,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할 경우 외국 감독당국의 항의, 국제 공조체제 약화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정안과 같이 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상 적법절차원리

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참고] IOSCO EMMoU 제7조(비밀보장) 국문 번역

(1) 각 당국은 이 양해각서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 답변, 조회, 관련 정보교환과 그 정보교환 내용 및 당국 간의 자문, 요청되지 않은 지원을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교환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비밀을 지킨다. 그러나 요청받은 당국은 요청하는 당국의 서면동의를 받을 경우, 요청하는 당국이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2) 당국들은 여기에서 고려된 사항 또는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요구에 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 7(1)조에 열거한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이 양해각서에 따라 받은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당국은 요구에 응하기 전에 다른 당국에 알리며, 이용될 수 있는 관련 정보에 관하여 적절한 법적인 면제나 특권을 설명한다. 각 당국은 이 양해각서에 따라 받은 비공개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금융감독원등의 권한 남용 가능성성을 방지하며,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측면과, 금융감독원 조사 업무 등에 미칠 영향, 수사기관과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개정안대로 이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체납자 등의 재산조회와 유사하게 통보 유예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거래정보등의 요구·제공·유예 등 현황 통계 내실화 (천준호의원안)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거래정보등의 요구·제공·통보·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경우 ① 이 법에 따른 제공 요구 건수, ② 다른 개별 법률에 따른 요구 건수, ③ 제공을 요구 받은 명의인의 수, ④ 제공을 요구 받은 계좌의 수 등을 포함하도록 세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현행	천준호의원안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 ----- ----- ----- -요구기관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제출명령, 영장, 정보제공요구서 건수
<신 설>	2.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요구문서 건수(개별 법률에 따라 문서로 거래정보제공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 설>	3.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명의인의 수
<신 설>	4.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계좌의 수

□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위원회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제공·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는 매년 12월 경 ‘금융거래정보 제공 현황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을 요구기관별 및 제공기관별로 분류하여 요구건수, 제공건수, 통보건수, 통보유예건수를 각각 제출하고 있음.

[표 2]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 분석보고서 예시(요구기관별)

구 분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법원및검찰등 수사기관	요구건수	649,062	731,700
	제공건수	579,855	646,820
	통보건수	437,699	472,393
	통보유예건수	247,161	255,866
국 세 청	요구건수	239,338	309,551
	제공건수	216,674	275,255
	통보건수	162,202	111,782
	통보유예건수	211,916	207,184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요구건수	20,763	15,649
	제공건수	20,391	15,126
	통보건수	855	438
	통보유예건수	177	179
...			
합 계	요구건수	1,860,459	2,161,241
	제공건수	1,751,736	2,028,015
	통보건수	819,349	812,598
	통보유예건수	479,165	479,780

□ 그러나, 이러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현황으로는 상세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 위 현황 건수는 요구기관에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한 공문 건수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한 건의 공문에 여러 건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실제 요구한 명의자 또는 계좌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요구기관별 분류의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동일한 구분으로 분류하고 있어, 기관별 구체적 요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제출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현황 분석보고서를 ‘요구기관별’로 작성하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요구 건수와 실제 제공한 명의인 및 계좌 수를 포함하도록 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 현황을 국회가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 아울러, 기존에는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정기국회 집회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참고로, 「금융실명법」 제4조의3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은 요구받은 명의인 또는 계좌 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법 제4조의3)

1. 사용목적 :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
2. 요구받은 인적사항 및 제공한 인적사항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각호1을 의미
3. 통보를 유예한 경우 사유 : 법 제4조의2 제2항 각호중 해당번호를 기재

3.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제도 변경(이정문의원안)

- 개정안은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주체를 현행 금융회사등에서 제공받은 자로 하고, 통보 시기 및 유예기간을 변경하며,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현행	이정문의원안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통보의 무자”라 한다)는 제공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정보등 제공의 대상이 된 명의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거래정보등 제공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2. 거래정보등 제공을 한 자 3. 거래정보등 제공을 받은 자 4. 거래정보등 제공을 받은 날짜 ② 통보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현행	이정문의원안
<u>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 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u> 1. ~ 3. (생략) <u><신설></u> <u>③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u>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u>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u> <u>③ 제2항에 따른 통보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u> <u>1. 제2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u> <u>2.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u> <u>④ 통보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u>

현행	이정문의원안
<u><신설></u>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 제공을 한 금융회사등에 대한 요청의 경우: 해당 명의인의 정보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 2. 그 외의 금융회사등에 대한 요청의 경우: 그 명의인이 해당 금융회사등의 이용자인지 여부 ⑤ 통보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용료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⑦ 통보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 제공을 받은 사실-----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	

현행	이정문의원안
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 6. (생략) <신설>	⑧ ----- ----- -----제7항까지를----- -----. 1. ~ 6.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보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금융실명법」 제4조의2¹⁴⁾는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제

-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 ③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 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공한 경우 그 사실을 명의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먼저,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 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 제2항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와 그 기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거나(제1호), 증거 인멸 등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제2호),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를 통보 유예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통보 유예 기간은 제1호의 사유는 유예요청기간,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는 최대 6개월임.
- 제3항은 통보 유예 기간의 연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 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1호와 같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은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거나,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 혐의 확인, 체납자 재산조회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통보를 유예할 수 있음.

□ 개정안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 통보 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행과 통보 주체, 통보 및 통보유예 기간이 달라지게 되며, 통보 유예 사유, 전달 방법과 통보의무자의 통보를 위한 확인 요청 등의 권한을 추가하고 있음.

○ 먼저, 통보 주체는 현행 「금융실명법」의 경우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등이고 전달 방법으로는 명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통보 주체를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로 변경하고, 서면 외에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음으로 통보 시기는 기존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 또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통보 유예 사유에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포함하며, 사법절차 또는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명예·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마지막으로, 통보의무자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등에 정보를 확인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표 3] 개정안 주요내용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통보주체	· 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등	· 정보를 제공받은 자(통보의무자)
통보시기	· 정보를 제공한 날 또는 유예기간이 끝난날부터 10일 이내	· 정보를 제공받은 날 또는 유예기간이 끝난날부터 30일 이내
통보방법	· 서면	·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
통보유예사유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1호) ·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2호) ·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할 우려(3호)	·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4호)
통보유예기간	· 1호: 유예요청기간 · 2호·3호: 최대 12개월(6개월 + 3개월 + 3개월 연장 가능) * 단, 상속·증여재산 확인, 채납자 재산조회 등의 경우 추가 연장 가능	· 1호: 유예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 2호~4호: 최대 6개월 * 추가 연장 예외 없음

□ 이러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보 절차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¹⁵⁾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15)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 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짜
-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받은 수사기관등은 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통지 유예 사유를 규정하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를 제외하고는 최대 6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④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로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2.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 단체의 구성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⑤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해당 당사자의 통신이용자정보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
2. 그 외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그 당사자가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자인지 여부

⑥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용료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4] 개정안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주요내용 비교

구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개정안
통보주체	· 정보를 제공받은 수사기관 등	· 정보를 제공받은 자(통보의무자)
통보시기	· 정보를 제공받은 날 또는 유예기간이 끝난날부터 30일 이내	
통보방법	·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	
통보유예사유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 ·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 ·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할 우려	
	·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	-
통보유예기간	· 생명이나 신체 안전 위협 우려(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 안전보장 위태 우려 포함): 유예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 기타: 최대 6개월	

□ 개정안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참고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 통보 절차를 강화할 경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한 기관의 책임성을 높여 과도한 요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 앞서 검토한 거래정보등 제공 사실 통보 예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¹⁶⁾과 함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보 주체를 변경할 경우 수사기관 등의 부담이 예상된다는 의견 및 통지업무 대행기관의 선정 필요성, 통보 유예 기간 단축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6) 1. 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 통보 대상 확대(4p)

□ 먼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의 논의 경과 및 관련 규정을 보면, 동 조항은 통신자료 제공요청권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공사실 통지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논의가 이루어졌음.

○ 이 과정에서 법무부, 수사기관, 이동통신사업자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통지 주체는 수사기관등¹⁷⁾으로 규정하되, 실제 통지 업무는 제3의 전담기관을 통해 대행하도록 협의하였음.

-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3¹⁸⁾에서는 이러한 통지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7)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및 제공사실 통지와 관련하여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부터 제13조의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에 따른 통지주체는 수사기관등(검사, 사법경찰관 등)임.

18)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
 2. 제83조의2제5항에 따른 확인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3. 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신이용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등은 제8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의 유에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대행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통지관리대장과 제3항에 따른 통지유에 통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은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⑤ 대행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83조의2제6항 및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으면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⑥ 대행기관은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수사기관등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⑧ 대행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제8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와 달리 개정안은 통보 주체를 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규정할 뿐 별도의 통지업무 대행과 관련한 조항이 없어,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직접 이러한 통지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수사기관이 통지를 위해 인적사항·연락처 등을 추가 조회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취득이 발생할 수 있고, 수사현장의 업무 부담으로 범죄대응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경찰청의 의견 제시가 있었음.

- 국세청은 금융기관과 달리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를 전달할 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통보 주체가 변경될 경우 과도한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제시함.

- 참고로, 2024년도 상반기 기준 거래정보등 제공 요구건수 상위 2개 기관은 ‘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73만건, 33.9%), ‘국세청’(31만건, 14.3%)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을 감안하여, 통지 주체를 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변경할지 여부 및 변경하려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3과 유사하게 통지업무 대행기관을 선정할 필요성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개정안은 통보 유예 기간을 현행 최장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 혐의 확인, 체납

자 재산조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보 유예를 계속할 수 있었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통보 유예기간이 단축될 경우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이 명의자에게 통보된 상황에서 명의인이 세무조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등 원활한 세무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국세청의 의견이 제출되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통보주체 변경으로 인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기관의 책임성 강화, 통보유예 기간 단축으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등 개정안의 취지와, 요구 기관의 업무 부담 우려, 원활한 세무조사 진행 어려움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절차를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울러, 통보주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려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통보 대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금지 의무 삭제 등 (천준호의원안)

□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20헌가5, 2022. 2. 24.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와 관련하여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현 행	천준호의원안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u>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 ----- ----- ----- ----- ----- ----- <u>누구든지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u> -----, ----- ----- ----- ----- ----- -----.
1. ~ 8. (생략) ②·③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천준호의원안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대통령 긴급재정경제 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 ----- ----- ----- ----- ----- ----- ----- <u>누구든지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등을</u>----- ----- ----- ----- ----- ----- ----- ----- -----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4조제1항¹⁹⁾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로 하여금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법 제4조제4항²⁰⁾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를

- 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 다. (생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 마. (생략)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 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나. (생략)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나. (생략)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 2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④ 제1항 각 호 [중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거래 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법 제6조제1항²¹⁾은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당초 이 법 제4조제1항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2월 위 부분과 벌칙인 제6조제1항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²²⁾²³⁾.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판대상조항(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은 금융거래정보의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게 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2020헌가5, 2022. 2. 24. 결정

23) 위헌결정에 따라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현행 법문에는 존재하고 있음.

금융거래정보의 유출을 막는 데 역지력을 가지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았음.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음.

- 그 근거로는 현대사회의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서만 가능하므로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해서만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
- 단순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행위가 그 자체로 형사제재의 당위성이 인정되는 유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일반인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공요구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사제재를 가고 있다는 점을 제시함.

□ 이에 개정안은 법 제4조제1항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²⁴⁾하여 기존에 명의자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면 처벌하던 것을, “누구든지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아울러,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대상은 아니었으나, 예외적으로 거래정보등을 알게된 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법 제4조제4항) 처벌하는 것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조항에 대해서도 함께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²⁵⁾ 불법적 수단으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24)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중 “단순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행위가 그 자체로 형사제재의 당위성이 인정되는 유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인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공요구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반영함.

25)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행위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정보제공요구 시의 수단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허위·부정한 진술을 하거나 변조·위조·부정취득된 문서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단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의 내용이 금융거래의 비밀과 관계가 없어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아니하는 등에는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유해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위헌결정되어 효력이 상실된 부분을 문헌상 삭제하거나(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98), 거짓된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24)하려는 개정안 두 건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향후 논의과정에서 이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6
